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906

발의연월일: 2024. 9. 11.

발 의 자:이기헌・이성윤・박민규

김성회 · 오세희 · 박희승

강준현 · 임광현 · 조인철

김준혁 · 김태선 · 정준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 표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.

그런데,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과 학습권 등 기본적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습권 침해의 요구, 보건·안전상 위험한 행위의 요구 및 다이어트 등 과도한 외모관리를 요구하는 행위도 제 한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제작 현장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구체적 역할도 중요하므로, 대중문화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제작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2항, 제21조의2 및 제21

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중 "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"을 "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는 행위
- 2.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을 강요하는 행위
- 3. 보건상 또는 안전상 위험성이 있음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
- 4. 과도한 외모관리를 강요하는 행위
- 5. 폭행·폭언, 성희롱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적·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

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)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신체적·정신적 건강, 학습권, 인격권, 수면권, 휴식권,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의3(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)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	제21조(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
역 제공) ① (생 략)	역 제공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	②
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<u>과다한</u>	<u>다음</u>
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	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
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	<u>.</u>
된다.	
<u><신 설></u>	1.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
	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는 행
	<u>위</u>
<u><신 설></u>	2.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 학
	습권 침해을 강요하는 행위
<u><신 설></u>	3. 보건상 또는 안전상 위험성
	이 있음에도 대중문화예술용
	역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
<u><신 설></u>	4. 과도한 외모관리를 강요하는
	<u>행위</u>
<u><신 설></u>	<u>5. 폭행·폭언, 성희롱, 그 밖에</u>
	<u>이에 준하는 신체적·정신적</u>
	위해를 주는 행위
<u><신 설></u>	제21조의2(청소년보호책임자 지
	정)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
	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

<신 설>

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신체적·정신적 건강, 학습권, 인격권, 수면권, 휴식권, 자유선 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 을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와 관 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3(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) ①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 구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